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5449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54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5264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변론 종결2016. 4. 22.

판결 선고2016. 5. 2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5264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0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0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중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로 고쳐 쓰고,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다음에 "앞서 든 증거들"을, 제10면 제6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수차 구두로 이루어졌음에도,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구두 설계변경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A는 2012. 4. 20. 내용증명우편(을 제10호증)을 통해 피고에게 'B의 기성금 선입금 5억 원 중 3억 원을 빌려 관련 회사인 I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연체액 3억 원을 변제하였다', '공사비는 전액 현금 선 지급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서 2차 대출금 5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기성고가

아니라 향후 기성고를 예상하여 증빙서류만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 지급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는 1,205,205,000원이었는데, 2차 대출 당시 B은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기초공사 및 토목공사)와 2차 공사(철골공사)를 마치고 공사비중이 10% 정도인 3차 공사(판넬 및 잔여 공사)만을 남겨 놓고 있어서 약 1억 원 정도만 추가로 투입하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기성고는 최소한 91.8% [= 이 사건 2차 대출 당시 기성고 1,133,390,030원 / (이 사건 2차 대출 당시 기성고 1,133,390,030원 + 예상 추가공사비 100,000,000원) × 100%]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인증서)의 기재는 앞서 갑 제8호증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면서 A와 함께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던 B 사장 J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보낸 확인서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제2차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91.8%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2차 대출 당시 원고 대출 담당 직원 D가 기성고내역서(갑 제10호증)와 공사내역서(을 제4호증)의 항목별 내용을 비교하는 등 관계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사인 B에 의문점을 확인하는 등으로 대출기관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듯이 금융기관이 담보취득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한다고 함'은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확인함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그 작성·발급자 등에게 조화·확인함으로써 정당한 기성고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화·확인 of 상대방은 대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도급인,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사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 감리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39% 정도로서 2차 대출 당시 제출된 기성고 내역서(갑 제10호증)는 공사내역서(을 제4호증)와 비교하였을 경우 원자재의 수량과 단가를 과장하거나 미시공 내역을 기시공 내역으로 포함시키거나 원래 공사내역서에 없던 품목을 추가하는 등으로 기성고가 많이 부풀려져 있음이 확인되는 점[위 기성고 내역서의 철골공사 총 청구금액이 위 공사내역서의 철골공사 총 공사금액의 2배를 초과한다], 이러한 2차 대출 당시 제출된 기성고 내역서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대출 담당자 D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시공사인

B(K)로부터 2단계 철골공사까지 마쳐 기성고율이 90% 가량이고 수차례 설계변경이 있어 추가비용이 들었다는 등의 구두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위 기성고 내역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 94%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원고의 대출 담당자 D가 2차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기성고를 직접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제1, 2차 대출금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유동화회사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방문시 촬영한 사진 등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출 담당자 D가 2차 대출 당시 기성고 조사를 충실하여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준영

판사심연수

판사정총령